

교회에서 공동체주의와 공동소유의 법적 의미

송재일 명지대 교수

논문 요지

본 연구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발현되는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회 재산의 공동소유 형태인 총유(總有) 제도의 법적 의미와 실무적 한계가 있음을 먼저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세속 법에 따르면 교회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분류되며, 그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민법 및 판례이론). 이러한 총유 제도는 구성원 개인의 지분권 및 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단체의 목적과 통제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종교 집단 특유의 공동체주의 이념을 일단 강하게 반영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최근 교회의 분열, 교인의 집단적 탈퇴 및 이단 시비 등으로 인한 재산권 귀속 분쟁이 빈발함에 따라, 종교적 공동체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단체의 유지 요청과 구성원 개인의 재산권 보장 사이의 규범적 긴장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다. 이러한 한계는 특히 대학교회 등 특수한 사례에서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교회 내 공동체주의와 재산의 공동소유 문제를 세속적 사법(私法)의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법(Divine Law)'이라는 근원적 규범의 관점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그동안 한국의 법원과 학계는 교회 재산의 귀속 문제를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총유(總有)' 법리에만 의존하여 포착해 왔다. 이러한 태도는 교회를 단순한 세속적 이익 집단으로 환원하는 한계를 지니며, 만물의 진정한 소유권자는 하나님이며 교인은 단지 이를 위탁받은 청지기(Steward)에 불과하다는 성경적 공동체주의의 본질을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교회를 둘러싼 재산권 및 운영권 분쟁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세속적 재산법의 획일적 적용이 초래하는 모순을 비판하고,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의 세속법이 교회 공동체의 자율적 질서인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사법(私法)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신앙적 공동체주의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회 재산 귀속 및 관리 법리를 조화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본다.

주제어 (Keywords): 교회 (Church), 공동체주의 (Communitarianism), 공동소유 (Co-ownership), 교회 분열 (Church Schism), 하나님의 법 (Divine Law)

I. 들어가며

먼저 이 글을 쓰고자 한 이유는 법학자로서 교회를 둘러싼 우리 법(세속법)의 해석 태도가 맞는지 실제로 교회 분쟁에서 효과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였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민법 교과서의 저자들은 교회를 권리주체로서 ‘비법인사단’을 그 재산소유형태를 공동소유 중 총유라고 설명하면서, ‘교회의 분열’에 대한 많은 법원의 판례를 소개한다. 그러나 그 결과는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판결이 아니라 그냥 찢어 죽이는 판결이 아닌가 평소 의구심이 들었다. 마치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엄마라고 주장하는 사건과 비슷한데, 솔로몬의 지혜가 담긴 최종 판결이 아니라 칼로 아이를 나눠 가지라고 한 모습에 가깝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교회에서 교회 분열이 발생하여 이 사건이 교회 내부의 분쟁해결기구를 넘어서 세속법정에 갔을 때(현재 진행중인 명지대학교회 사례가 있음), 그 판단기준으로 세속법말고는 대안이 없는가 답답해하던 찰나에 “교회공동체의 법 이해와 준수”라는 고세일 교수님의 논문¹⁾을 찾아 읽어보게 되었다.

여기에는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성품인 도덕법을 이해하고 삶에 있어서 중요한 실천 덕목의 방향으로 삼을 때 하나님의 법의 관점에서 세상의 법을 확인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고 세상을 섬길 때, 여러 민법 교과서에 있는 비법인사단인 교회 분열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또한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법’이고, 신약성경은 ‘복음’이라는 사고도 옳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의 법은 나쁘고, 복음은 좋다는 것도 잘못된 시각이라고 강조한다. 왜냐면 “구약성경 안에 하나님의 법과 함께 복음이 있고, 신약성경 안에도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법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삶의 실천으로 나아갈 때, 세상에 있는 여러 법도 하나님의 법의 시각으로 점검할 수 있다”고 한다. 하나님의 법과 세속법에 관한 다른 문헌(대표적으로는 김상용교수님의 “하나님의 법과 세속법의 관계 정립”²⁾)도 아울러 살펴보았는데, 참으로 통찰력과 지혜가 담긴 논문이라고 생각한다.

교회는 신앙을 매개로 결합된 영적 공동체이자,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인적·물적 자반을

1) 고세일, (2023). 교회공동체의 법 이해와 준수. 신앙과 학문, 28(1), 5-36.

2) 김상용, “하나님의 법과 세속법과의 관계정립: 우리나라의 사법을 중심으로”, 민사법연구(5), 법원사, 2004, 437-455면.

형성하는 실체적 단체이다. 현행 사법(私法) 체계는 교회를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규정하고, 교회 재산의 귀속 형태를 구성원들의 '총유(總有)'로 파악하고 있다(민법 제275조). 총유 제도는 단체의 통제력을 강조하고 구성원 개인의 지분권 및 분할청구권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개인주의적 소유권 원칙에 대한 예외이며, 일견 교회 특유의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를 반영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적 기초인 '하나님의 법(Divine Law)'의 관점에서 볼 때, 현행 총유 법리는 근본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성경적 공동체주의에 따르면 만물의 진정한 소유권자는 하나님이며, 교회와 교인은 이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청지기(Steward)에 불과하다. 즉, 교회 재산은 세속적 의미의 권리 집합이 아니라 신앙적 코이노니아(Koinonia)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적·목적적 수단이다.

한편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교회의 분열, 교단 탈퇴, 이단 시비 등으로 인한 재산권 귀속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법원은 이러한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주로 결의권 찬성 비율 등 세속 법적 절차와 사단법인 법리의 유추적용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이는 신앙 공동체의 영적 연속성이나 헌납된 재산의 신앙적 목적을 도외시킨 채, 교회를 단순한 세속적 이익집단으로 환원시키는 치명적인 법리적 모순을 초래한다. 하나님의 법이 중심이 되어야 할 신앙 공동체의 내부 규범이, 국가의 사법권력과 개인주의적 재산권 논리에 의해 종속되는 규범적 충돌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법(私法)적 한계와 규범 충돌 양상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공간이 바로 '대학 교회(University Church)'이다. 대학교회는 일반 지역 교회와 달리 구성원(학생, 교직원 등)의 유동성이 극히 높고, 물리적 공간의 법적 소유권자(학교법인)와 영적·공동체적 향유권자(신앙공동체)가 분리되거나 교차하는 특수한 이중적 지위를 지닌다. 학교법인은 세속법에 근거하여 배타적 소유권과 관리권을 주장하는 반면, 대학교회 공동체는 신법적 질서와 코이노니아에 기초하여 해당 공간에 대한 점유 및 사용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이는 단순한 무단 점유나 사용대차의 법리로 포섭될 수 없는, 세속법과 하나님의 법 간의 본질적 충돌이다.

따라서 대학교회를 둘러싼 재산 귀속 및 운영권 분쟁은 현행 민법상 총유 법리가 지닌 내재적 한계를 검증하는 최적의 시험대(Testbed)가 된다. 이 글은 대학교회 사례를 중심으로 세속적 재산법의 획일적 적용이 초래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신탁(Trust) 법리 및 형평의 관점을 수용한 새로운 교회 재산 관리 모델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II. 교회 공동체주의와 공동소유의 규범적 충돌

1. 로마법적 소유권(Dominium) 개념

교회 공동체의 재산 형성과 소유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대 사법(私法)의 기초인 로마법적 소유권(Dominium) 개념을 넘어, 하나님의 법(Divine Law)에 내재된 존재론적 전제를 규명해야 한다.

근대 사법(私法)의 근간을 이루는 소유권(Dominium) 개념은 로마법 이래 객체에 대한 개인의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지배권으로 발달해 왔다. 이 세속적 소유권 이데올로기는 소유자가 자신의 재산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무제한적 권능을 보장하며, 재산의 목적이나 타인에 대한 윤리적 책임은 소유권의 외곽에 머무는 부차적 요소로 간주한다.

2. 하나님의 법에 기초한 청지기적 소유와 코이노니아

그러나 '하나님의 법(Divine Law)'의 관점은 이러한 세속적 소유권의 전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한다. 성경적 소유관의 대전제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와 함께"(시편 24:1)이라는 창조주의 '만물 주권(Absolute Sovereignty)'에 있다.³⁾ 이에 따르면 인간은 우주 만물의 궁극적 소유권자가 될 수 없으며,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피조 세계의 관리를 위임받은 '청지기(Steward)'에 불과하다. 법적으로 음미하면, 청지기는 대리인에 해당하는데, 창세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한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의 정체성을 설명한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⁴⁾

청지기 사상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경적 공동체주의(Biblical Communitarianism)'로 발현된다.⁵⁾ 성경적 공동체주의는 사유재산 제도의 강제적 철폐를 주장하는 마르크스주의나, 개인의 권리를 단체에 맹목적으로 종속시키는 세속적 집단주의와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주의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교인들을 지체로 삼는 '유기체적 연합(Organic Unity)'과 아가페(Agape)적 사랑에 기초한 '코이노니아(Koinonia, 친교와 나눔)'이다.⁶⁾

3) 최용준. (2024). 기독교 세계관으로 본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관한 고찰: 헤르만 도여베르트의 사상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9(1), 45-65.

4) 고세일. (2023). 교회공동체의 법 이해와 준수. 신앙과 학문, 28(1), 5-36.

5) 이갑두. "성경적 청지기 이론 구축을 위한 탐색적 고찰." 로고스경영연구 16.4 (2018): 45-64.

6) 안신영, 염창선. (2020). 고대 기독교에서 재물의 소유와 포기의 관계. 신학과 사회, 34(4), 139-179.

초대 기독교 교부들과 학자들은 재물의 소유가 인간의 본성인 탐욕과 결합하여 일어나는 위험을 플라톤 사상이나 영지주의와 마니교, 스토아 철학처럼 고대 교회에서도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에 대한 대처 방식은 서로 달랐다. 플라톤, 영지주의와 마니교에서는 재물을 처음부터 악한 것으로 규정하고, 인간의 삶에서 포기하려는 경향이

사도행전에 묘사된 초대교회의 모습(행 2:44-45,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은 이러한 성경적 공동체주의의 원형을 보여준다. 여기서 나타난 재산의 통용은 법적 소유권 자체의 박탈이 아니라, 형제애와 신앙적 목적 아래 재산의 '배타적 사용권'을 자발적으로 유보하고 이를 이타적으로 개방하는 실천이다. 즉, 법적으로는 나의 소유(청지기적 수탁)이지만, 신앙의 규범 안에서는 공동체의 필요와 선(Good)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는 자기 비움(Kenosis)의 법리가 작동하는 것이다.

성경적 공동체주의(Biblical Communitarianism)⁷⁾에 따르면, 천지만물의 창조주인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소유권자이며, 인간의 소유권은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한시적이고 목적적인 권한에 불과하다. 이를 법리적으로 치환하면, 교회의 재산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배타적 지배 대상이 아니라, 신앙적 목적을 위해 수탁된 '청지기적 소유(Stewardship Ownership)'의 성격을 지닌다. 즉, 교인들이 헌금 등을 통해 형성한 재산은 하나님께 바쳐진(헌납된) 것이며, 교회 공동체는 이를 관리하고 사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의 지위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청지기적 소유관은 필연적으로 초대교회의 '코이노니아(Koinonia, 영적 교제 및 나눔)' 이념과 결합하여 독특한 형태의 공동소유를 파생시킨다. 사도행전 등에 나타난 원시교회의 재산 공유 형태는 개인의 재산권을 전면 부정하는 공산주의적 사유재산 철폐가 아니라, 형제애와 신앙적 목적 아래 재산의 '사용권'을 공동체 전체의 선, 즉 공동선(Total Good)을 위해 자발적으로 개방하는 규범적 실천이었다.

따라서 하나님의 법에 기초한 교회의 공동소유는 구성원들의 단순한 산술적 합이나 세속적 지분권의 집합이 될 수 없다. 이는 철저히 신앙적 목적에 구속되는 목적재산이며, 공동체 구성원들은 이 재산을 영적 성숙과 복음 전파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는 신의성실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를 법학적 개념으로 치환하면, 교인들이 소유한 재산이나 교회가 형성한 총유재산은 배타적 사유재산(Private Property)이 아니라 창조주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수탁된 '목적적 신탁재산(Purposive Trust Property)'의 성격을 띤다.

청지기적 소유권은 소유권의 포기나 공산주의적 국유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사유재

강했고 스토아 철학에서도 재물의 소유에 대해서 절제의 측면을 보인다. 고대 기독교에서도 재물의 소유와 탐욕, 부의 공공성과 청지기적 사명, 부자의 구원, 가난한 자들의 역할, 재물의 선용 등 재물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7) 문시영. (2014). 아우구스티누스의 사회윤리: 현실주의? 공동체주의?. 기독교사회윤리, (29), 7-37. 아우구스티누스의 사회윤리를 두고, 니버는 기독교현실주의(Christian Realism)를, 하우어워스는 기독교공동체주의(Christian Communitarianism)를 중심으로 각각의 해석을 전개하고 있다

산의 형성과 관리를 인정하되, 그 권리의 행사가 철저히 원소유자인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기속되는 수탁적 권능(Fiduciary Power)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교회의 구성원은 재산에 대한 사적 지분권자가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Duty of Care)와 충실의무(Duty of Loyalty)를 다해야 하는 공동 수탁자(Co-trustees)가 된다.

3. 우리나라: 현행 민법상 총유(總有) 제도의 적용 한계와 모순

(1) 공동소유 - 공유, 합유, 총유

교회는 말 그대로 교인들의 모임, 즉 여러 사람이 모인 단체라는 성격을 지닌다. 그렇기에 교회의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이나 재산의 소유, 사용수익처분 등에서 단독소유가 아닌 공동소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법에서 단독소유에 대비한 공동소유의 형태에는 공유·합유·총유의 3가지가 있으며, 모두 「민법」 물권편에서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262조~제278조).

첫째, 공유는 수인이 동일 물건의 소유권을 양적으로 분할하여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이다(민법 제262조1항, 양적 분할설). 공유자는 언제든지 목적물을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이행할 수 있다(민법 제268조1항 참조). 특약이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262조2항). 분할되지 않는 동안에는 공유자는 자기의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266조1항).

둘째, 합유는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이다(민법 제271조1항).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는 그 지분을 처분하거나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273조). 합유의 기초인 조합체가 어떤 공동목적 하에 성립하는 결합체이고, 먼저 이러한 결합체가 기초가 되어 어떤 물건을 소유하게 될 때에 비로소 합유관계가 생긴다는 점에서 공유와 다르고 총유와 비슷하다. 따라서 합유는 공유와 총유와의 중간적 위치에 있는 공동소유의 형태라는 견해도 있으며, 판례⁸⁾도 단체성은 약하고 개인성은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라고 하여 비슷한 태도를 보인다. 실제 합유가 인정되는 것은 적은데, 민법에서는 조합(제703조 이하, 특히 제704조)이 유일하고, 특별법상 합유에

8) 합유의 주체인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인 데 반하여...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는 신탁법상 신탁재산, 광업법상 공동광업⁹⁾ 정도가 있다.

셋째, 총유는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이다(민법 제275조1항). 총유는 그 기초인 법인이 아닌 사단에 있어서 구성원의 총합체가 하나의 단일적 활동체로서 단체의 체제를 갖추는 것에 비해 합유자들은 단체로서의 체제를 갖추지 못한다. 따라서 합유는 단체적 단일성을 가지지 아니한 점에서 총유와 구별된다. 또 공유에 있어서는 소유권이 양적으로 수인에게 분속되지만, 총유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관리·처분 등의 권능은 일체로서 사원의 총합체인 사단 자체에 속하고, 그 사용·수익 등의 권능은 각 사원에게 귀속하여 양자가 단체적 통제하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소유권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공유와 구별된다(질적 분할).

요컨대, 공유, 합유, 총유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을 것이다.

<표1> 공유, 합유, 총유의 비교

구분	공유	합유	총유
지분 존재 여부	○ (있음)	○ (있음)	X (없음)
목적	제한 없음	공동 사업 목적	단체 활동
처분/변경	각자 지분 처분의 자유	전원 동의 필요	사원총회의 결의 필요
예시	공동매수, 상속 등	조합계약	비법인사단

이렇듯 우리 민법은 공동소유 제도는 공유, 합유, 총유 세 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세계에서든 공동소유 3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는 그 유례를 찾기 힘든 독특한 입법례이다.

(2) 총유규정의 연혁

총유는 원래 중세 독일의 촌락공동체(Dorfgenossenschaft)에서의 촌락공용지

9) 신탁법 제50조 제1항은 수탁자가 여러인 경우 신탁재산은 수탁자들의 합유로 보고 있고, 광업법 제17조 제5항은 공동광업출원인은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광업법 제30조는 공동광업권자의 대표자 신고·지정·변경 등에 관해서는 동법 제17조를 준용하면서 공동광업권자의 법률관계를 합유로 파악하고 있다.

(Allmende) 소유이용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 개념으로, Otto von Gierke에 의하면, 게르만의 씨족단체인 지페(Sippe)와 마르크공동체(Markgenossenschaft)와 같은 공동체에서는 소유권의 권능이 관리·처분의 권능과 사용·수익의 권능으로 나누어져 전자는 공동체(Genossenschaft)에, 후자는 각 구성원에 귀속하였고, 위 두 권능이 공동체의 규칙에 의하여 결합하여 하나의 소유권을 이루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하는 게르만 공동체의 인적 결합구조를 물권법상 반영한 것이 총유라 한다. 1950년대 민법전 제정 당시 검증한 교수가 우리 민법에 도입하여,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소유 형태로 일반화한 것이 총유이다.¹⁰⁾

흥미롭게도 게르만법의 후예라 할 만한 독일 민법전은 공유와 합유, 두 유형만을 인정하고 있다. 독일민법은 공유물의 분할에 의한 공유관계의 해소(Aufhebung)에 대해서 우리 민법보다 상세한 규정(제749조-제756조)을 두고 있다. 또한 독일민법은 물권편에 합유에 관한 일반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조합계약(BGB 제705조 이하, 특히 제718조, 제719조), 가족법의 부부재산 공동관계(BGB 제1415조 이하), 상속법의 공동상속재산(BGB 제2032조)의 경우에 합유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민법처럼 독일민법의 영향을 크게 받은 일본민법, 대만민법을 보더라도, 일본민법은 프랑스민법처럼 공유만을, 대만민법은 독일민법처럼 공유와 합유¹¹⁾만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 민법전은 공동소유의 유형에 총유를 포함시키지 않았음에 반해, 한국 민법전은 가장 게르만적이라고 할 수 있는 총유까지 인정하고 있다. 17·18세기에 독일법학자들이 뿌린 씨앗이 과거 일본학계의 논의(대표적으로는 石田文次郎의 『土地總有權史論』)로 이어졌고 만주국 민법에 용어로만 들어갔고 엉뚱하게 한국 민법전에는 그 내용까지 새겨진 셈이다.¹²⁾ 총유에 관한 일본 학계의 흐름이 입법으로 구체화된 것이 만주국민법의 공동소유 조항(제240조-제255조)이다. 만주국민법은 공동소유의 형태로서 공유와 ‘총유’를 인정하였다. 하지만 만주국민법에서 말하는 총유는 우리 민법의 합유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한다. ‘총유’에 관한 만주국민법의 규정(제252조-제254조)은 다음과 같다.¹³⁾

10) Gierke, Deutsches Privatrecht Bd. 2(Sachenrecht), 1905, S. 382ff.; 이준현, "공동소유 제도에 대한 재검토 소고," 민사법학, 93호, 2020, 75-114에서 재인용.

11) 대만민법의 共同共有(제827조 이하)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 공동공유는 법률규정, 관습이나 법률행위로 공동관계가 인정되는 수인이 이에 기하여 물건을 공동소유하는 관계이며, 우리의 공유를 제외한 그밖의 공동소유, 즉 합유와 총유가 이에 속한다. 그러나 공동공유의 가장 일반적인 것이 조합재산의 공동소유이므로, 우리말로는 보통 합유로 번역된다. 자세한 것은 김성수 역, 대만민법전[비교민법총서 2], 법무부, 2012, 411면 및 동, "대만민법전의 물권법개정(2009년, 2010년)과 우리 민법전의 비교법적 시사점", 경상대 법학연구 제22권 제2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4, 19면 참조.

12) 명순구, "공동소유제도의 개정방향 -합유·총유의 제정비-", 안암법학 제34호, 안암법학회, 2011.

13) 前田達明 編, 史料民法典, 成文堂, 2004, 1734면; 이준현, 위 논문, 80면 재인용.

만주국민법

제252조 ① 어떤 지방의 주민, 친족단체 그밖에 관습상 총합제를 이루는 수인이 그 관계에 기하여 한 개의 물건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유자라고 한다.

② 공유자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해서는 관습에 따르는 외에 이하 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53조 ① 공유자의 권리는 공유물의 전부에 미친다.

②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제254조 공유자는 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을 가할 수 없다. 단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이는 합유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민법 물권편의 합유 규정은 스위스민법 제652조 이하의 규정을 만주국민법의 변형을 거쳐 계수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평가되고 있다.¹⁴⁾

문제는 ‘공유’¹⁵⁾를 포함한 만주국민법의 공동소유 조항은 우리 민법의 제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고, 만주국민법전의 공동소유 조문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정부안이 만들어졌다. 다만 정부안은 만주국민법 제252조 이하의 ‘공유’라는 용어 대신에 이를 ‘합유’라는 용어로 대체하였을 뿐이다.¹⁶⁾ 그런데 만주국민법에서 제252조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인 공유를 담은 규정이나, 이어지는 제253조와 제254조는 그 내용에서 오히려 오늘날의 합유와 어울리는 법률규정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만주국민법전의 ‘공유’나 정부안의 ‘합유’는 오늘날의 공유와 합유로 구별되기 전의 미분화된 개념이었다고 할 수 있다.¹⁷⁾ 정부안은 1개 조문만을 제외하고는¹⁸⁾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회부되었다. 이러한 정부안에 대하여 각 대학의 민법담당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수정의견을 제시한 것이 1957년에 공간된 ‘민법안의견서’인데, **김중환 교수**¹⁹⁾는 민법안의견서를 통해 근본적인 의심을 제기하면서, **공유·합유·공유로 구분되는 혁신적인 공**

14) 양창수, 공동소유, 370면. 김중환 교수도 공동소유 제도 개정안 중 합유 규정에 대한 각주9)~12)에서 직접적으로 스위스민법 제652조~제654조를 언급하고 있다(민법안의견서, 104~106면).

15) 만주국민법 제252조의 ‘공유’는 의용민법 제263조의 ‘공유의 성질을 가지는 입회권’을 ‘공유’로 명칭만 바꾸어 규정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김대정, “공유에 관한 민법규정의 개정방안,” 중앙법학 제14집 4호(2012.12), 중앙법학회, 78면 참조.

16) 이는 그동안 조선고등법원판례가 친족단체의 대표격인 종중에 있어서 종중재산은 종중의 ‘합유’에 속한다고 하여 왔기 때문이다.

17) 이준현, “공동소유 제도에 대한 재검토 소고,” 민사법학, 93호, 2020, 75~14

18) 초안 제257조(“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에게 대하여 공유물에 관한 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가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삭제되었다.

19) 김중환 교수는 비법인사단에 관한 제안과 공동소유 유형에 관한 수정제안을 집필하였다.

동소유 규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²⁰⁾ 이러한 김증한 교수의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한 현석호위원의 수정안(이른바 ‘현석호 수정안’)²¹⁾이 본회의에 제출되어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현행 민법의 공동소유에 관한 규정(제262조-278조)으로 확정되었다.²²⁾ 다만, 현석호 수정안 중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일반조항을 신설하자는 부분은 채택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²³⁾ 김증한 교수는 공동소유자 사이의 인적결합 형태를 반영하여 공동소유를 공유·합유·총유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의 공동소유 유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법률규정들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물인 총유에 관한 민법 규정은 비교법적으로 비교 대상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희귀한 것이며, 합유에 관한 물권법 규정들도 스위스민법을 제외하고는 비교법적으로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²⁴⁾ 김증한 교수는, “현대의 민법은 개인 자유의 이념 위에 입각하여야 한다는 데에 있다면, 그것은 개인활동의 자유는 필연적으로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다는 것, 결사의 자유는 필연적으로 무수한 종류의 인적 결합체를 산출한다는 것, 인적 결합체의 종류가 많아지면 필연적으로 그것에 부합하는 공동소유 형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았다.²⁵⁾ 이러한 인적 결합체의 대표적인 것이 법인과 조합인데, “인간은 천태만양의 결합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며 사회에는 천태만양의 인적 결합체가 존재하는 것이어서, 이 모든 인적 결합체를 법인과 조합이라는 두 개의 범주로 파악해 버릴 수는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법인과 조합에 포섭될 수 없는 수많은 인적 결합체가 사회에는 필연적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들을 분류하는 데에는 게르만법학자들의 중세 게르만 전통사회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큰 도움이 된다. 김증한 교수에 따르면, “게르만법학자들은 법인과 조합이라는 두 형태의 중간에 위치하는 천태만양의 인적 결합체를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합수적 조합이라는 두 개의 유형으로 나누었다”고 한다. 그 결과, 사람 사이의 “인적결합 형태는 ①법인, ②권리능력 없는 사단, ③합수적 조합, ④조합의 4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Gierke의 단체법 및 공동체 사상에 심취한 김증한 교수는, 위와 같은 인적 결합의 유형에 따라서 공동소유의 유형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그러한 의미에서 공동소유 형태는 인

20) 그 개정안 내용은 현행 민법의 합유·총유 규정과 거의 그대로 같다.

21) 정종휴, “청헌 김증한 교수의 공동소유론-특히 총유를 중심으로-”, 민사법학 69호(2014.12), 한국민사법학회, 254면.

22) 자세한 내용은 양창수, “민법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Ⅱ)-국회본회의의 심의-”, 민법연구 3권, 박영사, 1995, 53면 이하 참조.

23) 구체적인 과정과 국회 본회의에서의 토론에 대해서는 명순구, 『실록 대한민국민법 2』, 法文社, 2010, 246~256면 참조.

24) 이준현, “공동소유 제도에 대한 재검토 소고.” 민사법학, 93호, 2020, 75-14

25) 김증한, 신물권법(상권), 박영사, 1960, 170-171면.

적 결합 형태의 물권법에의 반영이다. 그런데, 상술과 같이, 인적 결합에 4개의 유형이 있으므로, 그 각각에 상응하여 4개의 공동소유 형태가 있게 된다. 인적 결합의 4유형 중 법인은 개인에 준하여 파악된 것이고, 그 소유형태도 개인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단독 소유이므로, 공동소유의 유형에서 제외되고, 결국 공동소유 형태에는 권리능력없는 사단에 있어서의 총유, 합수적 조합에 있어서의 합유, 조합에 있어서의 공유의 3유형이 있는 것으로 된다.”

金曾漢 교수의 제안은 石田文次郎의 『土地總有權史論』²⁶⁾ 이후 공유·합유·총유의 세 가지 공동소유형태가 있다는 당시 일본의 지배설²⁷⁾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공동소유에 관한 우리 민법의 입법과정을 살펴보면, 단체나 공동소유의 유형과 약 및 그 각 유형의 내용설명이 선형적으로 전개되고 있고 우리사회에서의 단체의 구성이나 운영의 실체에 대한 언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²⁸⁾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중세 게르만 사회에서의 총유 개념이 우리나라의 문중·종중과 같은 혈연단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²⁹⁾도 있다.

그 동안 우리 민법상 공동소유제도 그 중 총유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비판이 있어 왔다. 입법 당시부터 학계를 중심으로 폐지하자는 주장이 강력하였고, 폐지를 주장³⁰⁾하는 논거로서 총유 제도의 前근대성, 총유 개념의 논리적 부정합성, 종중·어촌계 등의 재산 분배 실무와의 민법규정 부조화, 법인 아닌 사단에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인정하여 부동산에 대한 등기능력(부동산등기법 제26조)과 소송상의 당사자능력(민사소송법 제52조)을 인정하고 있는 것 등을 들고 있다.

(3) 교회에 대한 총유규정의 적용상 한계

우리 민법은 제275조를 통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 소유 형태를 '총유(總有)'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는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교회를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보아 교회 재산에 총유 법리를 적용하고 있다. 물론 교회가 법인등기를 한 경우에는 교회의 단독

26) 石田文次郎, 『土地總有權史論』, 岩波書店, 1927.

27) 加藤雅信 편/ 佐久間毅 집필, 『民法學說百年史』, 三省堂, 1999, 260면.

28) 梁彰洙, 앞의 글 “共同所有 - 민법 제정과정에서의 論議와 그 후의 評價를 중심으로 -”, 378면.

29) 李好珽, “우리 民法上の 共同所有制度에 대한 약간의 疑問 - 특히 合有와 總有를 中心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 제24권 2·3호(1983), 116~117면.

30)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1963, 286-287면; 김기선, 한국물권법, 법문사, 1972, 280면 이하; 이호정, “우리 민법상의 공동소유제도에 대한 약간의 의문 -특히 합유와 총유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24권 2·3호(1983), 102면 등.

소유이다.

게르만법상의 총수(Gesamte Hand) 개념에 연원을 둔 총유 제도는, 공유(共有)나 합유(合有)와 달리 구성원 개인의 지분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단체적 규제와 목적을 강하게 반영한다는 점에서, 일견 교회의 공동체주의적 특성을 담아내기에 적합한 틀로 여겨져 왔다. 개인의 처분권과 분할청구권이 배제된 채, 총회(공동의회)의 결의를 통해서만 관리 및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은 교회 재산의 유지와 보존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나 세속법상 총유 제도를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본질적인 규범적 충돌과 해석론적 모순이 발생한다. 현행 사단법인 및 총유 법리의 핵심은 사단의 최고사결정기관인 사원총회(교회에서는 교인총회 또는 공동의회)의 '다수결 원칙'에 있다. 이는 재산의 귀속과 처분이 궁극적으로 현재 남아있는 구성원들의 세속적 합의(다수의 의사)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³¹⁾

이러한 세속적 다수결 논리는 교회 재산이 지닌 '신앙적 목적에 구속된 청지기적 신탁재산'이라는 본질을 훼손한다. 예컨대 교회의 분열이나 교단 탈퇴 시, 다수를 점한 교인들이 원래의 신앙적 정체성(하나님의 법과 교리)을 이탈하더라도, 세속법상 결의 요건만 충족하면 교회 재산을 독식할 수 있는 합법적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 이는 헌납된 재산이 특정 교리나 신앙 공동체의 영적 연속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헌납자의 의사 및 신법적 질서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요컨대, 현행 총유 제도는 교회를 세속적 이익단체와 동일선상에 놓고 재산의 사법(私法)적 지배구조에만 초점을 맞출 뿐, 재산에 내재된 종교적 목적성과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청지기적 의무'를 사법(司法)의 영역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III. 대학교회 사례를 통한 재산 귀속 분쟁 분석

1. 대학교회의 법적 지위와 이중적 성격 (학교법인 vs. 신앙공동체)

대학교회(University Church)는 대학 캠퍼스 내에 설립되어 학생, 교직원, 그리고 지역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독특한 형태의 신앙 공동체이다. 일반적인 지역 교회가 스스로의 재정으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교인들의 총유(總有)로 등기(또는 대표자 명의로 신탁등기)하는 것과 달리, 대학교회는 통상적으로 학교법인(교육재단)이 소유한 물리적 공간 내에 자리 잡는다. 이러한 태생적 배경으로 인해 대학교회는 현행법상 매우 복잡한 이중적 지위를

31) 김상용. (2026). 교회재산의 소유형태로서의 총유제도. 교회와 법, 12(2), 37-75.

갖게 된다.

한편으로 대학교회가 사용하는 예배당과 부속 시설은 사립학교법 및 민법상 '학교법인'의 배타적 소유권에 속하는 기본재산으로 취급된다. 세속적 재산법의 관점에서 대학교회는 학교법인의 자산을 무상으로 사용대차(使用貸借)하거나 임대차하는 지위에 불과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대학교회는 독자적인 신앙 고백과 예배, 헌금 수합, 직분자 선출 등 코이노니아(Koinonia)를 실천하는 독립된 신앙 공동체, 즉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지닌다. 특히 대학교회는 학생의 졸업과 입학 등으로 인해 일반 교회보다 구성원의 유동성이 극히 높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현재 남아있는 구성원의 다수결을 중시하는 현행 총유 법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요소이다. 이처럼 대학교회는 물리적 공간의 소유권(학교법인)과 신앙 공동체로서의 영적 실체(교회)가 분리됨으로써, 국가의 세속법과 교회의 신법(神法)적 질서가 교차하고 충돌하는 최전선이 된다.

2. 재산권(세속적 소유권)과 영적 점유·사용권의 충돌 양상

대학교회의 이중적 성격은 필연적으로 재산의 귀속 및 사용을 둘러싼 심각한 규범적 충돌을 야기한다. 이 충돌은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물리적 공간을 둘러싼 학교법인의 세속적 소유권과 대학교회의 영적 점유·사용권 간의 대립이다. 학교법인이 재정 악화나 정책 변경을 이유로 예배 공간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세속법은 소유권 절대 원칙에 따라 학교법인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의 관점에서 해당 예배당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오랜 기간 수많은 교인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성별(聖別)된 영적 공간이다. 세속법의 기계적 적용은 신앙 공동체가 누려온 종교적 향유권과 공동체주의적 가치를 일거에 박탈하는 폭력적 결과를 초래한다.

둘째는 대학교회 구성원들이 헌납한 재산(헌금, 비품 등)의 귀속 주체 불확정성 문제이다. 교인들이 바친 헌금은 대학교회라는 특정 신앙 공동체의 유지와 복음 전파를 위한 '청지기적 신탁재산'이다. 그러나 대학교회가 학교법인 산하의 부속기관처럼 취급될 경우, 교인들의 헌금이 학교법인의 일반 회계로 편입되거나 대학의 세속적 목적을 위해 전용될 위험이 존재한다. 이는 헌납된 재산이 오직 하나님의 뜻(신앙적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는 성경적 공동체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역으로, 교회가 독립된 사단임을 내세워 구성원 다수결로 헌금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분배하려 할 때에도 현행 총유 법리는 이를 통제할 적절한 규범적 수단을 제공하지 못한다.

결국 대학교회에서 벌어지는 재산 분쟁 사례는, 교회의 재산을 배타적 소유권이나 세속적 지분권의 논리로만 재단하려는 현행 사법(私法) 체계가 얼마나 빈약한지를 여실히 증명한다.

대학교회는 신앙 공동체의 영적 점유권과 목적재산으로서의 본질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공유 법리를 뛰어넘는 새로운 법적 구성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핵심적 사례이다.

3. 명지대학교회 사례

대학교회의 이중적 성격은 필연적으로 재산의 귀속 및 교회 운영을 둘러싼 심각한 규범적 충돌을 야기하며, 이는 최근 발생한 명지대학교회 분쟁 사례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명지대학교회는 기독교 사학인 명지대학교의 설립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학교법인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자생한 신앙 공동체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물리적 공간(학교법인 소유)과 영적·공동체적 향유권(신앙공동체)이 충돌할 뿐만 아니라, 특정 구성원들의 기득권 추구가 사법(司法) 분쟁으로 비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명지대학교회 분쟁은 일부 교인들이 오랜 기간 교회 내에서 형성한 기득권과 사적 탐욕에 기반하여 다수의 교인을 선동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들은 대학교회가 지닌 고유한 설립 목적과 청지기적 소유관을 망각한 채, 세속적인 사단법인의 다수결 원리를 악용하여 교회의 인사권 및 운영권, 나아가 재산적 지배력을 장악하려 시도하였다.

그 핵심적인 법적 분쟁이 바로 명지대학에서 파송한 담임목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다. 명지대학교회는 대학의 기독교적 건학 이념을 수호하고 학원 선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교 측에서 담임목사를 파송하는 특수한 영적 질서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일부 선동된 교인들은 교회를 단순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전제한 뒤, 민법상 총회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며 담임목사의 영적 권위와 직무를 법의 이름으로 정지시키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법에 기초하여 순수하게 예배와 코이노니아를 실천하고자 했던 다수 교인의 종교적 권리와 영적 안정감은 심각하게 침해되었다. 헌납된 재산과 예배 공간이 하나님을 향한 신탁재산이라는 본질은 탈색되고, 오직 세속적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권력 투쟁의 장으로 변질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명지대학교회 사례는 국가의 세속법이 대학교회의 특수성과 신법적 질서를 외면하고 단순한 사원총회의 결의나 사단적 실체에만 매몰될 때, 오히려 비성경적 기득권이 사법(司法)의 보호를 받아 종교적 자율성이 철저히 파괴되는 모순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IV. 신법(神法) 질서를 반영한 대안적 해석론 모색

1. '신탁적 공유(Trust-based Co-ownership)' 법리로의 전환 가능성

현행 민법상 총유(總有) 제도가 배태한 규범적 모순과, 명지대학교교회 사례에서 노정된 세속적 기득권의 횡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단법인의 다수결 원리에 종속된 재산권 법리에서 탈피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영미법계의 신탁(Trust) 법리와 대륙법계의 목적재산(Zweckvermögen) 개념을 융합한 '신탁적 공유(Trust-based Co-ownership)' 법리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한다.

하나님의 법에 의할 때 교회의 재산은 특정 교인들의 세속적 지분이나 처분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는 절대적 목적을 위해 구속되는 영적 자산이다. 따라서 대학교회를 포함한 교회의 재산 형태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총유재산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유지와 복음 전파(대학교회의 경우 기독교적 건학 이념의 구현과 학원 선교)라는 고유한 목적을 위해 구성원 전체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탁받은 '신탁재산'으로 재해석되어야 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교인들은 소유권자나 사단법인의 사원이 아니라 신앙적 목적 달성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수탁자(Trustee)이자 청지기에 불과하다.

신탁적 공유 법리를 대학교회 분쟁에 적용하면, 일부 선동된 교인들이 세속적 다수결을 악용하여 교회의 인사권이나 재산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신탁의 본질적 목적을 위반하는 배임적 행위가 된다. 학교법인 역시 물리적 공간에 대한 형식적 소유권자이지만, 대학교회라는 신앙 공동체가 존재하는 한 그 공간은 기독교 대학의 설립 이념이라는 신탁적 목적에 기속된다. 결국 양자는 배타적 권리 주체로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라는 상위 규범 아래 각자의 위치에서 코이노니아와 학원 선교의 목적을 공동으로 달성해야 하는 병행적 수탁자의 지위로 재구성될 수 있다.

2. 정교분리 원칙에 따른 사법(司法) 개입의 자제와 종교적 자율성 보장

신법적 질서가 세속법의 잣대에 의해 파괴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또 다른 해석론적 과제는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사법심사 자제(Judicial Restraint)'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다. 근대 입헌주의의 산물인 정교분리 원칙은 단순히 국가와 교회의 제도적 분리를 넘어, 세속 국가의 사법(司法) 권력이 신앙 공동체의 내적 자율성과 영적 질서에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적극적인 보호 규범으로 기능해야 한다.

명지대학교교회 사례에서 일부 교인들이 대학교회의 특수한 설립 배경과 영적 질서를 무시하고 법원에 제기한 담임목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종교적 권위와 신앙적 리더십의 문제를 세속적 고용관계나 사단법인의 대표권 분쟁으로 치환한 전형적인 오류이다. 세속 법원이 명지대학교교회의 특수한 파송 구조(학교법인과 신앙공동체의 결합)나 교리적 정당성을 판단하지 않은 채, 단순히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절차적 하자만을 이유로 담임목사의 직무를

정지시킨다면, 이는 국가 권력이 교회의 심장부인 예배와 코이노니아의 질서를 마비시키는 중대한 위헌적 침해이다.

따라서 법원은 종교단체의 내부 분쟁, 특히 대학교회처럼 일반적인 사단법리로 포섭되지 않는 독특한 신앙 공동체의 사건에 개입함에 있어서 철저한 사법 자제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재산권 분쟁의 외관을 띠고 있더라도 그 실질이 교리의 해석, 신앙적 정체성, 혹은 기독교 대학의 건학 이념 구현과 직결된 문제라면, 법원은 이를 일반 민법상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 법리로 재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 교회의 정관, 교단 헌법, 그리고 대학교회의 역사적 설립 취지에 담긴 자율적 규범력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한다. 나아가, 교회의 분열이나 다수파의 횡포로 인해 헌납 재산의 신앙적 목적이 훼손될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세속법적 합법성 이전에 '형평(Equity)과 선(Good)'의 관점에서 진정으로 신법적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다수 교인의 종교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3. 대학교회 분쟁에 던지는 규범적 시사점

청지기적 소유와 성경적 공동체주의의 본질을 이해할 때, 현행 사법상 총유(總有) 제도의 한계와 대학교회 분쟁의 위법성이 명확해진다. 대학교회 내의 예배 공간이나 교인들의 헌납 재산은 특정 기득권 세력이 다수결을 통해 사유화하거나 세속적 권력 투쟁의 전리품으로 삼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이는 명지대학교의 건학 이념을 구현하고 학원 선교와 공동체의 영적 성숙을 도모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부여된 '신탁재산'이기 때문이다.

결국, 명지대학교회 사례에서 일부 선동된 교인들이 사단법인의 다수결 원리를 악용하여 담임목사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교회 운영권을 장악하려 한 행위는, 단순한 절차적 다툼이 아니라 청지기적 수탁 의무를 저버린 '영적 배임(Spiritual Breach of Trust)'이자 성경적 공동체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다. 법원은 이러한 분쟁을 사법(私法)의 기계적 잣대로만 재단할 것이 아니라, 그 재산과 조직에 내재된 청지기적 목적과 신앙 공동체 본연의 코이노니아 질서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해석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

4. 교회 내부의 대안적 분쟁해결기구와 분쟁해결기준으로서 하나님의 법

(1) 세속 법원 의존의 한계와 성경적 분쟁해결의 원칙

교회 내 분쟁을 국가의 세속 법정에 호소하는 현상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행사라는 외관을 띠지만, 신앙 공동체의 본질적 관점에서는 심각한 규범적 모순을 내포한다. 성경

은 성도 간의 다툼을 세속의 불의한 자들 앞이 아닌 성도들 앞에서 해결할 것을 강력히 권고 하며(고전 6:1-8), 이는 교회 내부의 자율적이고 평화적인 분쟁해결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법'의 명시적 선언이다.

명지대학교회 담임목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례에서 확인되듯, 세속 법원은 신앙 공동체의 영적 질서나 청지기적 소유의 본질을 심리할 권한도, 역량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법원은 철저히 사적 자치와 사단법인의 다수결 원리, 그리고 총유재산의 관리 절차라는 세속적 잣대만을 들이댄다. 그 결과 진실로 신법(神法)적 질서를 수호하려는 다수의 교인들이 오히려 사법(司法)의 이름으로 축출되거나 권리를 침해당하고, 기득권에 결탁한 일부 세력이 교회를 장악하는 합법적 외관을 얻게 되는 비극이 발생한다. 따라서 교회의 본질과 성경적 공동체주의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의 사법(司法)적 판단에 의존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교회 내부의 독자적인 '대안적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³²⁾

(2) 분쟁해결기준으로서 '하나님의 법'의 실체화

교회 내 ADR 기구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분쟁을 판단하는 실체적 기준이 세속 민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분쟁해결의 구체적 척도로 삼기 위해서는 다음의 규범적 실체화 작업이 요구된다.

첫째, 판단의 준거로서 '청지기적 수탁 의무(Fiduciary Duty of Stewardship)'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분쟁의 당사자 중 어느 쪽의 행위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세속적 기득권 유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헌납된 재산과 교회의 본래적 신앙 목적을 수호하기 위한 선량한 관리자의 행위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둘째, 대학교회와 같이 특수한 목적과 지위를 지닌 교회의 경우, 대학의 '건학 이념'과 '학원 선교'라는 목적 규범이 최우선적인 해석 기준으로 작동해야 한다. 명지대학교회의 예처럼 학교법인에서 담임목사를 파송하는 특수한 영적 리더십 구조는 일반 교회의 청빙 절차와 다르며, 이는 대학교회만의 고유한 자율적 규범(교회법 및 정관)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세속 법상 결의 요건의 흠결 여부보다, 당해 행위가 코이노니아의 회복과 기독교 학원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지가 절대적인 분쟁해결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32) 김정우, (2014). 교회 분열로 인한 재산권 분쟁의 교회법적 해결 방안에 관한 소고, 교회와 법, 1(1), 62-84; 송삼용, “교회 재산 분쟁의 특성과 그 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과 미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5.

(3) 대안적 분쟁해결기구(ADR)의 도입과 자율적 질서 회복

이러한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삼는 대안적 분쟁해결기구는 개별 교회의 정관이나 교단 헌법에 명시적인 '중재(Arbitration) 또는 조정(Mediation) 조항'을 담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확보할 수 있다. 교인들이 교회 공동체에 가입할 때, 상호 간의 재산권이나 운영권 분쟁 발생 시 세속 법원에 제소하기에 앞서 교회 내부의 화해중재기구(예: 기독교화해중재원 또는 교단 내 총회재판국 등)의 결정에 따르기로 하는 '중재합의(Arbitration Agreement)'를 명문화하는 방안이다.³³⁾

이러한 중재합의가 존재할 경우, 국가 법원은 중재법에 따라 사법(司法) 개입을 자제하고 해당 사안을 각하하거나 교회 내부의 기구로 돌려보내야 할 법적 의무를 진다. 이를 통해 일부 탐욕스러운 구성원들이 세속법의 다수결 논리나 가처분 제도를 악용하여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대안적 분쟁해결기구의 확립은 단순한 소송 경제나 분쟁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절차적 도구가 아니다. 이는 국가 사법권의 무분별한 개입으로부터 종교적 자율성과 정교분리의 원칙을 수호하고, 재산권 다툼으로 얼룩진 교회가 다시 '성경적 공동체주의'와 '하나님의 법' 아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가장 실천적이고 규범적인 방벽(防壁)이 될 것이다.

(4) 소결

교회 분쟁은 일반적인 사적 소유권 다툼을 넘어, 교회의 법적 지위, 정교분리 원칙, 교단 헌법과의 관계, 「민사소송법」 상 당사자 자격 및 소의 이익 등 복합적이고 중첩된 법적 쟁점을 수반하며, 이는 사법부의 판단에도 본질적인 한계를 초래한다. 더구나 우리법은 법인 등기를 갖추지 않은 교회를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보고 그 재산을 총유 개념으로 해석하기에 그러한 한계는 증폭된다. 사실 교회마다 다양한 설립 운영과 재산관리 방식이 있을 것이고 교단 탈퇴, 정관 개정, 대표권 인정, 유지재단 편입의 법적 효력 등 다양한 분쟁에서도 그에 맞추어 다른 법적 판단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 명지대학교교회 사례는 일반적인 판례법리와는 달리 접근해야 한다.

교회와 국가, 하나님의 법과 세속 법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성경에 기초하여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우리 법의 총유 개념보다 미국에서 발전한 교단 존중 원칙(Deference

33) 장우건. (2017). 교회재판과 국가재판의 관계. 교회와 법, 4(1), 109-141.

Principle), 중립법 원칙(Neutral Principles of Law), 명시적묵시적 신탁법리 등 비교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로는 화해나 조정 전치주의의 도입, 한국형 ADR 및 기독교화해중재원의 활성화, 표준정관 등록제가 있어야 할 것이다. 법원에서도 중립법 원칙의 제도적 수용, 총유 해석의 일관성 확보, 중재법원 설치 및 분쟁중재명령제도 도입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교단 자체 차원에서는 교단 헌법과 지교회 정관의 정비, 내부 조정 절차의 제도화, 재판국 전문화 및 교회 재산의 신탁법리 정립이 포함된다. 끝으로 정책·입법적 방안으로는 「교회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법」 제정, 민간 ADR 기구의 법적 지위 부여, 종교단체 정관의 등록·공시 제도 도입 등이 요청된다.³⁴⁾

V. 시사점 및 결론

이 글에서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발현되는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회 재산의 공동소유 형태인 총유(總有) 제도의 법적 의미와 실무적 한계가 있음을 먼저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세속 법에 따르면 교회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분류되며, 그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민법 및 판례이론). 이러한 총유 제도는 구성원 개인의 지분권 및 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단체의 목적과 통제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종교 집단 특유의 공동체주의 이념을 일단 강하게 반영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최근 교회의 분열, 교인의 집단적 탈퇴 및 이단 시비 등으로 인한 재산권 귀속 분쟁이 빈발함에 따라, 종교적 공동체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단체의 유지 요청과 구성원 개인의 재산권 보장 사이의 규범적 긴장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다. 이러한 한계는 특히 대학교회 등 특수한 사례에서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회 내 공동체주의와 재산의 공동소유 문제를 세속적 사법(私法)의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법(Divine Law)'이라는 근원적 규범의 관점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한국의 법원과 학계는 교회 재산의 귀속 문제를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총유(總有)' 법리에만 의존하여 포착해 왔다. 이러한 태도는 교회를 단순한 세속적 이익 집단으로 환원하는 한계를 지니며, 만물의 진정한 소유권자는 하나님이며 교인은 단지 이를 위탁받은 청지기(Steward)에 불과하다는 성경적 공동체주의의 본질을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34) 송삼용, “교회 재산 분쟁의 특성과 그 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과 미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5.

요컨대, 교회를 둘러싼 재산권 및 운영권 분쟁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세속적 재산법의 획일적 적용이 초래하는 모순을 비판하고,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의 세속법이 교회 공동체의 자율적 질서인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사법(私法)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신앙적 공동체주의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회 재산 귀속 및 관리 법리를 조화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본다.